

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“전자기적합성시험기관추가인정기준”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10 : 2008. 6. 20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
기술표준원장

전자기적합성시험기관추가기술요건 개정

구분	규격번호	규격명	규격내용
개정	KOLAS-SR-006	전자기적합성시험기관 추가기술요건	별첨

별첨 : 1. 개정전문(KOLAS-SR-006)
2. 신규대조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자기 적합성시험기관 추가 인정기준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10 : 2008. 6. 20)은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끝.